

##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설치자의 성명·주소 |  |
|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|  |
| 전문교육기관의 주소 |  |
| 교육과정명      |  |
| 지정조건       |  |

위 교육기관을 「항공안전법」 제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